

문서번호	보건위생과-9983
결재일자	2016.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이미경	강성은	고영석	05/30 이희영		
협 조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고취시키고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 201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서울시 생활보건과)

II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6. 5월 ~ 12월
- 평가대상 : 393개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항목)

III 추진실적

□ 연도별 평가대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종	이용 미용	숙박 목욕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이용 미용	숙박 목욕 세탁	이용 미용

□ 연도별 평가실적 및 평가결과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분						
대상업종		이용업 미용업 (피부제외)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업소수 (개소)		823개소 (전체) 이용 130, 미용 693)	558개소 (전체) 숙박 124, 목욕 40, 세탁 308, 위생관리용역 86	924개소 (전체) 이용 122 미용(일반) 163 미용(피부) 74 미용(종합) 565	379개소 (전체) 숙박 106 목욕 24 세탁 249	887개소 (전체) 이용 109 미용(일반) 577 미용(피부) 74 미용(종합) 127
평가 결과 (등급)	녹색	69 (8%)	36 (6.5%)	47 (5%)	112 (30%)	565 (63%)
	황색	215 (26%)	140 (25%)	162 (18%)	123 (32%)	121 (14%)
	백색	539 (66%)	376 (67.4%)	715 (77%)	144 (38%)	201 (23%)

IV 세부추진계획

□ 평가기간 : 2016. 5월~12월

□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15. 12. 31일까지 신고된 업소(신고상황에 따라 평가대상 수 변경가능)

○ 현황 (2016. 1. 1.기준, 단위:개소)

구분	총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업소수	393	110	33	250

□ 평가목표 : 대상업소 98%(폐업 및 소재지변경 업소 제외)

□ 평가주체 : 광진구 보건위생과

□ 평가반

○ 내·외부 구성 인력

- 공공기관 : 광진구 보건위생과

- 민간기관 : (사)대한숙박업중앙회광진구지회, (사)한국목욕업중앙회광진성동·중랑지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광진·성동지부

- 개 인 : 공중위생명예감시원(6명)

○ 평가반 구성

- 구성 : 2인1조(공무원, 공중위생명예감시원)

※ 민간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 투명성 부여

□ 평가내용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은 업소명, 주소, 영업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평가영역은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하여야하는 항목
(시설환경, 고객 안정성, 서비스 품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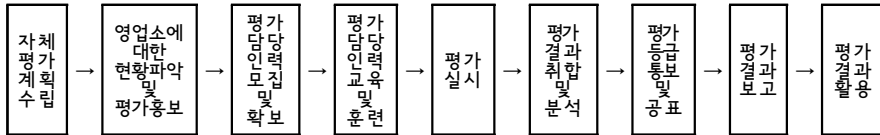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총항목수	3개영역 30개항목	3개영역 41개항목	3개영역 29개항목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6개)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10개)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5개)
준수사항	게시현황, 객실·먹는물 관리 등(8개)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등 (19개)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등 (4개)
권장사항	소화기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16개)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 방지, 식품판매 등(12개)	작업대, 세탁물 인수증 교부 등(20개)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 업소 방문을 통해 평가항목에 따라 질문, 관찰등의 측정방법 활용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절대평가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 등급)

□ 평가사업 수행흐름도



□ 평가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 : 공중위생명예감시원(6명)
- 교육내용
 - 공중위생서비스 개요, 서비스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비스 평가표 작성요령 등
 - 위생서비스 평가자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문예절 등

□ 홍보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지역신문 및 아차산 메아리, 광고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등

□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 등급 결정

구 분	등 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이상~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평가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행정처분 부과대상이므로 최우수업소로 볼수 없음

○ 위생관리등급 결정 및 공표

- 통보 : 평가받은 해당업소에 위생등급표 발급·송부
- 공표
 - ▶ 기한 : 2017. 1. 31까지
 - ▶ 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등 언론매체

○ 우수 영업소 로고 수여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 수의 10%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V 소요예산

예산 : 2,800천원

예산과목

- 보건위생과, 보건위생수준향상, 공중위생수준향상, 공중위생업소서비스평가

구 분	산 출 내 역 (원)
총 계	4,2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비스평가를 위한 소모품 구매 1,200,0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000,000 - 50,000원 X 6명 X 10회

VI 행정사항

평가대상업소에 사전예고 안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및 결과 홍보

평가결과 보고(보건복지부) : 평가완료후 20일 이내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1부

4. 평가점수 계산표 1부.

5. 평가결과 보고서식 1부.

6. 평가자 교육사항 1부.

7.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활용안 1부.

8.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1부. 끝.